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조례안

서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 1 조 (목적) 이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정비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건물, 기타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자에게 부과한다.

제 3 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공시지가(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다만, 인접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필지 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한다.

③점용료는 년액으로 산정하되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등이 1제곱미터 또는 1미터미만은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광고탑, 광고판, 간판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 면적으로 한다.

⑤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에 단위당 금액은 50원단위로, 기간단위가 1일인경우의 단위 금액은 10원 단위까지 끊어서 산정한다.

⑥별표1의 제6호의 경우.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⑦별표 1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 변동율이 10퍼센트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 할수 있다.

제 4 조 (점용료의 조정) 2년이상 계속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 퍼센트 이상 증가할때의 당해년도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 5 조 (점용료의 징수시기) ①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때에는 허가증출

교부할때에 전액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년도분을 허가할때에, 그 이후년도 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전에 징수한다.

②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납부케 하거나 납부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 6 조 (점용료의 감면)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②도로의 점용이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송수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한 점용의 경우 점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 7 조 (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 8 조 (부당이득금의 징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 9 조 (징수의위임)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1972. 7. 7 조례 제230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점 용 료 산 정 기 준 표

(별표 1)

(제3조 1항 관련)

(금액의 단위: 원)

점 용 물 의 면 적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 용 단 위	기간 단위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전주	1개	1년	600	
	전주와 유사한 것			900	
	공중전화			24,100	
	송전탑 및 기타의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 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	직경 0.1미터 이하	길이 1미터	1년	150
		직경 0.1미터 초과 0.2미터 이하			300
		직경 0.2미터 초과 0.4미터 이하			600
		직경 0.4미터 초과 0.6미터 이하			900
		직경 0.6미터 초과 0.8미터 이하			1,200
		직경 0.8미터 초과 1.0미터 이하			1,500
		직경 1.0미터 초과			1,500

(금액의 단위 : 원)

점 용 물 의 면 적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 용 단 위	기간 단위	
	기타의 관	직경 1미터 초과			3,000
		직경 0.1미터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직경 0.1미터 초과 0.2미터 이하			450
		직경 0.2미터 초과 0.4미터 이하			900
		직경 0.4미터 초과 0.6미터 이하			1,350
		직경 0.6미터 초과 0.8미터 이하			1,800
		직경 0.8미터 초과 1.0미터 이하			2,250
		직경 1미터 초과			4,500
		3. 광고탑, 광고 판, 간판, 사 설 안내표지, 현수막, 이취 기타			광고탑, 광고
기타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15,000	

(금액의 단위: 원)

점 용 물 의 면 적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 용 단 위	기간 단위			
이와 유사한 것	사 설 안 내 표 지		1개	1년	12,500	
	현 수 막	제사나 종교 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일	50	
		기타의 용도			100	
	아 취	도로 횡단	표시면적	1년	30,000	
		기타	1제곱미터		15,000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 적치장,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 축 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 입 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금액의 단위 : 원)

점 용 물 의 면 적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 용 단 위	기간 단위	
5. 철도, 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 축 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 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 자동판 매기, 상품진 열대 기타 이 와 유사한 것	버스표 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 벽, 발판, 대 기소등의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일	100

(금액의 단위: 원)

점 용 물 의 면 적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 용 단 위	기간 단 위	
공사용 시설 및 재료	기 타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 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 주차장, 광장, 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공작물, 물 건 및 시설	농업, 주택 및 식물 재배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점 용 료 조 정 산 식

(별표 2)

(제4조 관련)

산출 점용료의 증가율	납 부 할 점 용 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0/100 + (증가율 - 10/100) × 3/1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3/100 + (증가율 - 20/100) × 1/1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6/100 + (증가율 - 50/100) × 6/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9/100 + (증가율 - 100/100) × 3/1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22/100 + (증가율 - 200/100) × 1/100}]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25/100 + (증가율 - 500/100) × 5/1,000}]